

수원지방법원 2022. 2. 17 선고 2021나6211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2. 17 선고 2021나6211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2. 18 선고 2019가소344722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

변론종결 2022. 1. 20.

판결선고 2022. 2. 17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2. 18. 선고 2019가소344722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,097,5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진,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